

대구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단1318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피고(선정당사자)A

변론 종결2023. 4. 14.

판결 선고2023. 4. 28.

주 문

- 가. 소외 B와 피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피고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1. 4.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소외 B와 선정자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21. 4.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B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8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선정자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86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6. 8. 31.	6,170원
개인지방소득세(2010년 귀속분)	2017. 1. 15.	174,346,990원
개인지방소득세(2009년 귀속분)	2017. 1. 15.	7,443,920원
개인지방소득세(2011년 귀속분)	2017. 1. 15.	2,123,470원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7. 8. 31.	6,170원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8. 8. 31.	6,170원
합계	183,932,890원	

나.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는 망 D(2021. 2. 2. 사망)와 선정자 E 사이의 자식으로 그 형제로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 F, G, C이 있다. 망 D이 2021. 2. 2. 사망함으로써 피고 A을 포함한 선정자들, B가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피고를 포함한 선정자들 및 B는 2021. 4. 13.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E 6/20 공유지분, 선정자 F, G 각 3/20 공유지분, 선정자 C, 피고 A 각 4/20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C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2021. 4. 2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8649호로 선정자 E은 6/20 공유지분, 선정자 F, G은 각 3/20 공유지분, 선정자 C, 피고 A은 각 4/20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C이 2021. 4. 2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86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B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2021. 4. 13.(등기부상 원인일자로 기재된 2021. 2. 2.)로부터 1년 이내인 2021. 8. 25.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와 피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양평군, 이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무자력을 심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자신의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 및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좋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피고를 포함한 선정자들 스스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B와 피고를 포함한 선정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B와 선정자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는 원물반환하여 지분에 대한 공매 또는 경매절차를 거칠 경우 선정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B에게, 피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8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86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정

별지